

의안 번호	555
----------	-----

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(안)

# 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#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(안)

## 검 토 보 고 서

2026. 2. 25.

전문위원 한 미 경

### 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나. 의안번호 : 제555호
- 다. 제출일자 : 2026. 2. 3.
- 라. 회부일자 : 2026. 2. 11.

### 2. 제안이유

-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2(승인 및 동의)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추진근거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, 제81조(비용보조)

나. 위탁대상 현황

- 시설명 :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
- 위치 :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 28(안암동), 지2층
- 규모 : 약 133.84㎡(약 40.5평)
- 설치기준 : 건축물 연면적 최소 66㎡ 이상(거실, 조리실, 사무실 등)
- 인력 : 5인 (센터장 1, 사회복지교사 3, 사무원 1)

다. 위탁기간 : 위탁 협약일로부터 5년

라. 위탁방법 : 공개 모집,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의 후 선정

마. 위탁사무의 범위

-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시설관리·운영
- 장애인 낮 시간 동안 일상생활 돌봄지원
- 맞춤형 프로그램 및 문화여가수업을 통한 개별적 기능향상 지원
- 우리구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및 기타 구가 요청하는 사항 등

바. 위탁예산 : 200,000천원(구비100%, 인건비 및 운영비)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#### 1)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# 2)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#### 3)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(승인 및 동의)

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.

②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.

4)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(민간위탁사무 내용)

제5조(민간위탁사무 내용)

1.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자활·취업·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3. 문화·예술·영상·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4. 교육·교양·체육·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5. 보건·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6. 사회적기업, 공정무역,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7.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
8. 그 밖에 청소, 경비, 교통,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

5) 장애인복지법 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6) 장애인복지법 제81조(비용보조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본예산 편성(민간위탁금 200,000천원)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□ 동의안 개요

-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예정인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,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2<sup>1)</sup>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임

### □ 주요내용

- 신규 설치 예정인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로,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, 위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□ 민간위탁의 적정성

- (시설 및 인력) 대상 시설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<sup>2)</sup>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<sup>3)</sup> 등의 기준(건축물 연면적 최소 66㎡ 이상, 인력 3명 이상 등)에 적정
- (위탁기간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<sup>4)</sup>에 근거하여 5년으로 설정

1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2(승인 및 동의)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

2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3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1조(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)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,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

4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- (위탁사무) 위탁사무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<sup>5)</sup>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1조<sup>6)</sup>에 따른 시설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, 시설관리·운영뿐만 아니라,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 지원 등을 하고
- (선정절차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<sup>7)</sup>,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<sup>8)</sup>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‘민간위탁 선정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므로 절차상 타당

## □ 종합의견

-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예정에 있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,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계획인바, 법적 절차 및 위탁의 필요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5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6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1조(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)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,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7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에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8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수탁기관 선정)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제6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.

[참고]

장애인 주간이용시설 현황

연번	지역	시설명	법인명	이용자 정원	이용자 현황	종사자 정원
1	종로구	비둘기주간보호시설	서울기독교사회복지회	15	13	5
2	종로구	라피엘주간보호시설	희상복지재단	10	6	3
3	중구	영락주간보호센터	영락사회복지재단	15	10	5
4	중구	남산골주간보호센터	서울농이인협회 중구지회	15	8	3
5	중구	여성사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	(사)사각장애인여성회	10	10	3
6	중구	사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	(사)서울특별시사각장애인인협회 중구지회	15	14	4
7	중구	파란미음주간보호센터	(사)서울특별시자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중구지부	15	15	5
8	중구	구립중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	(사)동행연우회	12	12	5
9	용산구	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	사회복지법인 청운보은동산	12	10	5
10	용산구	서울시 농아노인지원센터	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	15	13	4
11	용산구	햇빛자리	서울기독교사회복지회	10	10	5
12	용산구	한빛장애인주간보호시설	한빛재단	10	10	5
13	성동구	성동주간보호센터	(재)성모성삼수도회	13	11	4
14	성동구	성모주간보호센터	(재)성모성삼수도회	12	13	6
15	성동구	함께주간보호센터	서울장애인부모연대	12	12	4
16	성동구	성동-래주간보호센터	사회적협동조합 우리나래	12	3	4
17	광진구	정립화관 주간보호시설	한국소아비협회	15	13	3
18	광진구	희망의학교	재단법인 대한여수교장로회(고신)총회유지재단	18	18	6
19	광진구	하인장애인 주간보호센터	하인의료사회재활협동조합	10	9	4
20	광진구	희망하우스	대한여수교장로회 고신총회유지재단	10	10	5
21	동대문구	이름모리주간보호센터	사)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	10	10	4
22	중랑구	원광장애인 주간보호시설	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	12	11	5
23	강북구	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	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	12	12	5
24	강북구	한미음주간보호시설	서울시장장애인부모회	12	12	5
25	강북구	헬렌칼라의집 주간보호시설	서울기독교사회복지회	10	11	5
26	강북구	참사랑나눔주간보호센터	사단법인 나눔	12	12	4
27	강북구	참사랑나눔 주간보호센터2호	사단법인 나눔	12	12	4
28	강북구	이음주간교육센터	사단법인 희망이음커뮤니티	12	12	4
29	도봉구	자안저주간보호센터	대한여수교장로회 총회(합동축)복지재단	15	12	6
30	도봉구	파라희망센터	개인	20	14	5
31	도봉구	주비라키 해피홈	개인	20	16	6
32	도봉구	주간보호시설 인강원	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	15	14	5
33	도봉구	도봉주간보호센터	서울시장장애인부모회	10	10	5
34	도봉구	그린도봉주간보호센터	곰두리복지재단	12	11	5
35	노원구	가브리엘주간보호센터	한국자폐장애인협회	10	11	4
36	노원구	노원장애인주간보호센터	청운보은동산	14	12	5
37	노원구	노원사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	(사)한국사각장애노인복지협회	15	13	5

38	노원구	다운주간보호센터	사회복지법인 다운희	15	15	5
39	노원구	동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	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	25	15	6
40	노원구	버디스디장애인지원센터	버디스디복지재단	15	15	4
41	노원구	북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	한국봉사회	15	14	5
42	노원구	상계장애인주간보호센터	사회복지법인 서울기독교사회복지회	16	14	5
43	노원구	삼감주간보호센터	(사)한국자폐장애인의협회	12	12	5
44	노원구	성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	사회복지법인 성민	12	12	5
45	노원구	오뚜기노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	한국노성마비복지회	10	11	4
46	노원구	중계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	한국봉사회	15	12	5
47	노원구	평화장애인주간활동센터	함께하는복지	15	11	5
48	노원구	하계장애인주간활동센터	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	16	10	4
49	노원구	하하센터	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	10	9	3
50	노원구	이름드리꿈터	엔젤스헤이븐	18	13	7

- 출처 : 보건복지부, 장애인 주간이용시설현황(2024년 4월 기준), 공공데이터포털 추출